# 더샵 오산엘리포레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및 유의사항]

- 「더샵 오산엘리포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a href="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a>)으로 동시 운영할 예정이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예약은 운영예정인 「더샵 오산엘리포레」홈페이지(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더샵 오산엘리포레」홈페이지(<a href="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a>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동반자 1인 포함, 총 2인)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당사가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녀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외 동반자 1인까지만(총 2인) 입장 가능합니다. ※ 자녀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1600-5440)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11.(금)**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b>적용기간(</b> 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11.)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❶「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또는 ❷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❸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이하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같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 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 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국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 생 부지제공자, 장애 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_	_	_	필요	필요	필요	_
소득기준	_	-	적용	_	적용	_	_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 한 자는 수도권(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 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 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 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 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 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인 오산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6.30.)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 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 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 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오산시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24.11		(664)	
일 정	2021. 06. 21.(월)	2021. 06. 22.(화)	2021. 06. 23.(수)	2021. 06. 24.(목)	021. 06. 24.(목) 2021. 06. 30.(수)		2021. 07. 12.(월) ~ 2021. 07. 18.(일)
방법		인터넷 청약(0	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기는) 건본주택 내방		
장 소	<ul> <li>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PC(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 앱</li> <li>* 청약통장 기업은행 구분 없음</li> </ul>	- 스		당사 견	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 서 청약 가능합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05.2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더샵 오산엘리포레 :「오산시청 주택과 18921호(2021.06.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6개 동, 총 9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58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9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6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7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1.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수)

주택			주택형	약식	주택공급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901-2-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	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001000004	01	059.9800	59	59.9800	21.4800	81.4600	37.2900	118.7500	40.6600	285	28	28	57	20	8	141	144	10
		02	075.5400A	75A	75.5400	26.3300	101.8700	46.9700	148.8400	51.2200	162	16	16	32	11	5	80	82	6
민영 주택	2021000394	03	075.7700B	75B	75.7700	26.0100	101.7800	47.1100	148.8900	51.3600	162	16	16	32	11	5	80	82	6
干气		04	084.9000	84	84.9000	29.4900	114.3900	52.7800	167.1700	57.5500	318	31	32	63	22	9	157	161	12
	합계								927	91	92	184	64	27	458	469	34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 상(청약 시) 주택형	059.9800	075.5400A	075.7700B	084.9000
약식 표기(더샵 오산엘리포레)	59	75A	75B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 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 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함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3(60%)			잔금(30%)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CUTUU	71.7111	וור	71011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11.11.	2022.04.11.	2022.08.11.	2023.01.11.	2023.04.11.	2023.07.11.	입주지정일
			1층	5	70,341,000	228,459,000	298,80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89,640,000
		1015 5 05	2층	10	70,341,000	240,459,000	310,800,000	31,080,000	31,080,000	31,080,000	31,080,000	31,080,000	31,080,000	31,080,000	93,240,000
050 0000	005	101동 5, 6호 103동 5, 6호	3층	10	70,341,000	247,659,000	318,0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059.9800	285	104동 5, 6호 105동 5, 6호	4층	10	70,341,000	255,959,000	326,30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32,630,000	97,890,000
		106동 5, 6호	5~19층	150	70,341,000	260,659,000	331,0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20층 이상	100	70,341,000	263,959,000	334,30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33,430,000	100,290,000
			1층	3	88,610,000	267,290,000	355,90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106,770,000
		101동 4호	2층	6	88,610,000	281,490,000	370,100,000	37,010,000	37,010,000	37,010,000	37,010,000	37,010,000	37,010,000	37,010,000	111,030,000
075.5400	162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3호 106동 4호	3층	6	88,610,000	290,190,000	378,80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113,640,000
Α	102		4층	6	88,610,000	300,090,000	388,70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116,610,000
			5~19층	90	88,610,000	305,590,000	394,20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118,260,000
			20층 이상	51	88,610,000	309,490,000	398,100,000	39,810,000	39,810,000	39,810,000	39,810,000	39,810,000	39,810,000	39,810,000	119,430,000
			1층	3	88,852,000	263,248,000	352,10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105,630,000
		101동 3호	2층	6	88,852,000	277,248,000	366,10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109,830,000
075.7700	162	102동 3호 103동 3호	3층	6	88,852,000	285,848,000	374,70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37,470,000	112,410,000
В	102	104동 3호 105동 4호	4층	6	88,852,000	295,548,000	384,40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115,320,000
		106동 3호	5~19층	90	88,852,000	301,048,000	389,90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38,990,000	116,970,000
			20층 이상	51	88,852,000	304,948,000	393,80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118,140,000
			1층	2	99,561,000	300,139,000	399,70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119,910,000
		101동 1, 2호	2층	12	99,561,000	316,039,000	415,60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124,680,000
084.9000	318	102동 1, 2호 103동 1, 2호	3층	12	99,561,000	325,839,000	425,400,000	42,540,000	42,540,000	42,540,000	42,540,000	42,540,000	42,540,000	42,540,000	127,620,000
004.9000	310	104동 1, 2호 105동 1, 2호	4층	12	99,561,000	336,839,000	436,40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130,920,000
		106동 1, 2호	5~19층	180	99,561,000	343,039,000	442,60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44,260,000	132,780,000
			20층 이상	100	99,561,000	347,439,000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 3.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 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 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 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 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 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	75A	75B	84	합 계
		국가유공자 등	8	4	4	8	24
	장	기복무 제대군인	4	2	2	4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	2	4	12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5	3	3	6	17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	1	2	6
		인천광역시	1	1	1	2	5
	200	등소기업 근로자	4	3	3	5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오산시 5	및 경기도 거주자(50%)	14	8	8	16	46
다자네가구 독일중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b>(50%)</b>	14	8	8	16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	57	32	32	63	184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11	11	22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8	5	5	9	27
	· 합 계		141	80	80	157	45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합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 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
자격요건/ 자격제한	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 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

구 분		ч	용								
	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형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
	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1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 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2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 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오산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오산시 거주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무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기준		มอ
89HJ	배점	기준	점수	0 77
л آ	10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7(1-11(1)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7 4 - 1 1 (=)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3세대 이상 세대구성(3) 5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 · · · · · · · · · · · · · ·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1년 이상 5년 미만	10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1.51 11.5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71 1 71 E (3)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 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 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84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전배우 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함)이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재혼 포함)인 무주택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고 그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2.2.)]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거주자)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자녀수 산정 방법

- 공급신청자가 재혼 경력이 없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면 모두 포함
- 공급신청자가 재혼인 경우
- :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2.2.)]에 따릅니다.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20%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상위소득,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 전원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 ① 공급신청자, ❷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❸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❹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① 공급신청자, ②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④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6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고그이처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u> </u>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222,468원~	9,222,468원~	9,611,742원~	10,111,431원~	10,611,120원~	
(상위소득, 30%)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 거주자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Ш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 자격 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오산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오산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어,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이므로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주택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 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 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오산시)에 거주 시(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2순위 :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4)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 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	1순위	전 주택형	<ul> <li>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분양권등' 포함)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li> <li>①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한 자</li> <li>②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한 자</li> </ul>
민영 주택	오산시 거주자  2. 기타지역: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인천광역시 거주자 ③ 경기도 거주자		전용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ul> <li>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 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주택형 추첨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1순위자로서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sup>※ 「</su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 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 분	신 청 자 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 기 주태고그사회자 - 나 주태고그사회자의 베오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등(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고급시청자 보이오 보양기조소 사전에서 페이하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2) 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포함) 4)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5)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미혼의 자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공 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나) 단, 만 30세 이상인 주택공급신청자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다)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 30세 미만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6)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무주택자에 한함.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_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② 부양 가족수		1명	10	5명	30	※ 청약 신청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35	2명	15	6명 이상	35	(1)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		90 910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명	20	-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A) (1) X 11 11 X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기납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_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나 네이버인증서 를 청약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b>신청 대상자</b>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b>2021. 06. 21.(월)</b>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1 4 01	해당지역	오산시 거주자	<b>2021. 06. 22.(화)</b>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일반공급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b>2021. 06. 23.(수)</b>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b>2021. 06. 24.(목)</b> 08:00~17:30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 1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수도권)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위반 시 부적격 처리)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 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 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한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청약 신청」⇒「APT청약 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당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6: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 반 공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내리 신청사(배우사 및 직계존·비족 포함)로 간수하며, 	생기 구미사양 외에 다음의 서듀들 추가도 구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 마감 시간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 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 2021. 06. 30.(수)
OLHLAD	1순위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공급	2순위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

- 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b>2021. 06. 30.(수) ~ 2021. 07. 09.(금)</b> (10일간)		<b>2021. 06. 30.(수) ~ 2021. 07. 09.(금)</b>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b>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b>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동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을 통해 당첨내역 확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b>2021. 06. 30.(수)</b>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자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선 정 방 법
	<ul>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85㎡ 이하의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li> <li>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추첨제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일반공급 입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
및 예비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는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가입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인 경우 주집의 양법으도 메미법무사들 신경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의 순 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 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선 정 방 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
	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
	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
	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
	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
유의사항	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
	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고그 데사지르니 도, 중소로 배정반고 고그게야요 체경합지 이나한 경우에도 당첨지르 버머(1회 특별고그 나요 가죠) 해당 그비니로 미비 나 게야체경 중기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 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 계획이 해제될 후 썼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 '무역중합에 된던 규칙」 제57소 제68에 따라 무역적공모들 받고, 동모면 필부터 7월 이내의 기간에 소영하지 못할 경우 영점 취소 및 등합계획이 취소될 무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 쓰으며, 구역적 영업자도 현경한 영구 영우 현영아녀는 구역의 합구자조합증고를 기준으로 영업을표를모구나 구조한 및 구기·영역파글자적 1년, 구조한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기가지고 V/N로 (이십년이에서는 지구 기반/ 이번 서는 반이포크(반이반단이이라에포크 포마/크 이리시포 반이로 포 빠입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 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٧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일정은 별도 안내(홈페이지, 개별연락 등)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	2021. 07. 02.(금) ~ 07. 08.(목)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 장소 : 더샵 오산엘리포레 견본주택(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사전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더샵 오산엘리포레 홈페이지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 견본주택으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여부,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자격검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사전방문예약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더샵 오산엘리포레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 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청약 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처리 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해당자)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공통 서류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7.171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 아래 표'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0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7206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 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둰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 년도 서류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 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비사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노부모 가점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기타 가점 확인 서류	_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고)	
무적격 통보를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신청 시 추가사항	0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로서 견본주택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 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 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NOBA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Ы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의 서류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 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 자격	해당 자격 입증 제출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경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거 1년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공통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 아래 표'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참조]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그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점제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7/11/2 7	

	서후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l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무적격 통보를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신청 시	0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추가사항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sup>※</sup>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78	서	류유형	alcru >	#1.71×	확인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IT 적인 및 ㅠ의사항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I® 배으자 및 세대원이 색인 프로토 색인 네트 네트 확이(*순색터도트터 역세까지 기가지장으로 발금)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VII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 07. 12.(월) ~ 07. 18.(일)	• 더샵 오산엘리포레 견본주택(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sup>※</su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sup>※</sup>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국민은행	272501-04-251769	아시아신탁㈜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	추후 별도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바그기즈	취이 미 ㅇ이피충
	필수	해당자	구미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0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제출한 경우 제외)
	0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0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 C 계약 시 C	0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0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본인 발급 당첨자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 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 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 동으로 하여야 하며,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체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 및 제출을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 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형의 경우 정부정책 규제로 중도금대출 불가)의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 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 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를 비롯한 사업관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선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 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 | 발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공사

1. 발코니 확장비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잔 금 (90%)
	할고니 확장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기일
59	5,600,000	560,000	5,040,000
75A	6,100,000	610,000	5,490,000
75B	5,600,000	560,000	5,040,000
84	7,000,000	700,000	6,30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국민은행	272501-04-257435	아시아신탁(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섀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안방)'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제거 등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플러스 옵션) 품목(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플러스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서 뒤 이 뒤	설치위치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 금 (90%)
TE				계약시	입주지정일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유리도어)	전 주택형	1,200,000	120,000	1,080,000
		59	2,500,000	250,000	2,250,000
안방 붙박이장	침실1(안방)	75A	2,800,000	280,000	2,520,000
(슬라이딩장)	점을 (변경)	75B	2,800,000	280,000	2,520,000
		84	3,000,000	300,000	2,700,000
붙박이장	침실3(75B 침실2)	59, 75A, 75B	800,000	80,000	720,000
돌악이경	삼설3(/3B 삼설2)	84	900,000	90,000	810,000
	T HL	75A	900,000	90,000	810,000
장식장	주방 (59타입 제외)	75B	650,000	65,000	585,000
	(55니답 세되)	84	920,000	92,000	828,000
		59	2,500,000	250,000	2,250,000
룸인룸	침실2+침실3	75A	2,700,000	270,000	2,430,000
(베이직형)	(복도팬트리+룸인룸(슬라이딩 유리중문))	75B	2,700,000	270,000	2,430,000
		84	2,700,000	270,000	2,430,000
		59	4,200,000	420,000	3,780,000
룸인룸	침실2+침실3	75A	4,500,000	450,000	4,050,000
(에듀형)	(복도팬트리+룸인룸(슬라이딩 유리중문)+책상)	75B	4,500,000	450,000	4,050,000
		84	4,500,000	450,000	4,050,000
		59	1,400,000	140,000	1,260,000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 내 간접조명	75A	1,600,000	160,000	1,440,000
특화조명	+거실, 침실 감성조명	75B	1,600,000	160,000	1,440,000
		84	1,800,000	180,000	1,620,000
수납강화	현관+주방 (대형 현관창고+홈바형 다이닝 수납장+복도장)	84	4,500,000	450,000	4,050,000
스타일링 바스	욕실 (건식 세면공간+수납장+케어룸 포켓도어)	84	1,500,000	150,000	1,350,000
청정환기시스템	다용도실(4단계 필터+공기질센서)	전 주택형	1,300,000	130,000	1,170,000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알파룸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 거실은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관중문 선택에 따라 주택형별 현관신발장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주박가저옵션 등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9 1071262 0					(27 - 27 - 17)7/3/3/ 2-17
구분	품목	주택형	가격	제조사	비고
키친패키지 1	BI김치냉장고+수납장	75A, 75B, 84	1,600,000		
키친패키지 2	비스포크(냉장/변온)+수납장	59	3,500,000	LG / 삼성	
기신패기시 2	비스포크(냉장/변온/김치)+수납장	75A, 75B, 84 5,500,000			
전기오븐	전기오븐	75A, 75B, 84	400,000	_	키친패키지 선택 시 선택가능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1,200,000	LG / 삼성	
음식물처리기	_	전 주택형	750,000	_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방가전옵션은 전 주택형이 선택 가능합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퇴	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4,000,000		
59	선택2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500,000		
75A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200,000		
75A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8,000,000	LG전자	
75B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200,000	LG & AF	
756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8,000,000		
84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400,000		
04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8,200,000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거실+침실1(안방))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 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추후 별도 공지(예정)	추후 별도 공지(예정)	추후 별도 공지(예정)

-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납부주체가 당첨자(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I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 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월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부여할 예정임)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 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부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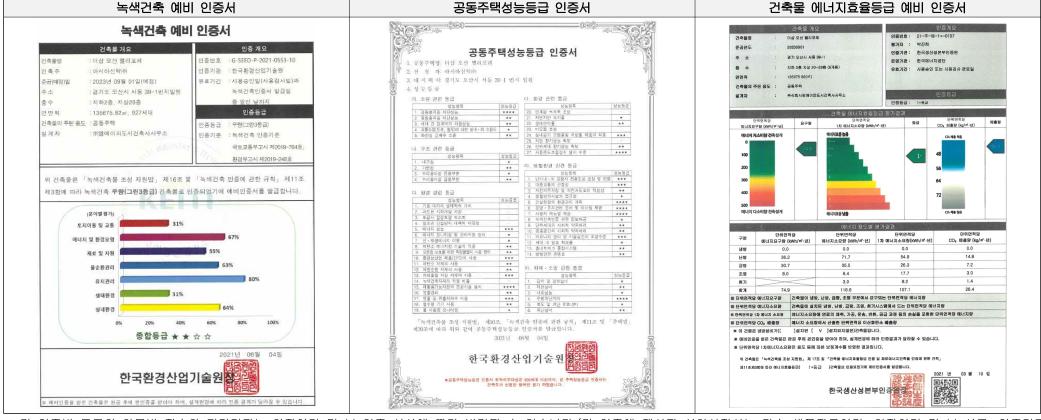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스테이션, 커뮤니티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사우나실, 키즈플레이존, 맘스카페, 코인세탁실, 독서실, 스마트워크룸, 작은도서관)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 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21540 1227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 보일러 적용(개별난방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든 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내진설계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07400호	252,894,5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sup>※</sup>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 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 호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진
금 액	2,533,300,000	652,690,000	660,000,000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 호	아시아신탁(주)	(주)포스코건설	서동개발(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4층(모충동, 리드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3453801	174611-0002979	150111-0284567

####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이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동의한다.
- 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이 지정·통보하는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와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④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를 상대로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 하자보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주)포스코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에게 있다.
- ⑥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도인 겸 수탁자 (아시아신탁(주))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⑦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 및 시공사((주)포스코건설)는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서동개발(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아시아신탁(주))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 나.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X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본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 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제 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호수가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 내용과 계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인·허가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 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1년 2월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서측으로 광로 2-2(서부우회도로) 및 중로 2-144가 신설 예정이며, 북측으로 대로 1-6(가장로)가 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서동저수지가 위치하며, 단지 남측으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내 유수지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에서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및 남동측으로 대규모 근린공원(감투봉)이 접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오산세교2지구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통신 인입을 위한 맨홀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단지 내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단지 내·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및 조성 공원 등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0.9㎞)에 오산시립쉼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오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 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가수초등학교까지 통학로로 이용될 서부우회도로 부체도로 공사가 입주이전에 완료될 경우 가수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오산 중학군(오산중학교, 대호중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단,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당해 사업으로 발생되는 고등학생은 오산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교육부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계획은 향후 공동 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용시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산시청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하부 지하/지상층 및 주변에 팬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세대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105~120m/min(최고속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TV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동(101동)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기는 101동, 103동, 105동의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옥외 보안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지 내 택배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 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은 1등급이 적용됩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 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팬룸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별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05동, 106동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지붕 설치로 조망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1층에 경로당, 맘스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계획(경로당 및 맘스카페는 지상 1층)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사행활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는 각 동의 필로티 하부 및 옥외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동의 필로티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제연구획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간섭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일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사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 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인·허가 사항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다르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조망 간섭.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견본주택의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필로티 부위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필로티 외주부 일부 벽체가 삭제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설계변경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천 시 세대 외부 장식물 마감부위에 우수가 떨어짐으로써 일부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 및 시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구조물의 형태는 실시설계 시 구조검토에 따라 기둥의 형태. 사이즈. 개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옥상에는 옥상 녹화가 설치 예정으로. 옥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등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에서 해당 옥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및 입면 마감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재활용품처리장은 지하2층 105동 인근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동선 및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대, 창고, 자전거보관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APT의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WI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4g입니다.(VII-0.204g)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핵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휴게시설, 놀이시설, 수공 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동 형태에 따른 세대 배치계획 상 세대 거실 2면창을 통해 인접세대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총 1,119대(**아파트 1,115대(세대당 1,2대)**. 근린생활시설 4대 /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충전 주차면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은 지하2층으로 진입가능하며,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2층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2층 약 2.7m, 지하1층 약 2.3m로 부위별로 상이하며,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택배차량 통행은 지하2층(차량통 행로 높이 2.7m)에 한해 소형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주차구역 및 일부 구간은 천정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연결가능한 층수는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주차장 사용성과 주차동선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주차장 연결층과 이동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1동.102동.103동.104동 : 지하2층 주차 후 각 동 출입구 이용. 지하1층 주차 후 각 동 출입구 이용
  - 105동.106동 : 지하2층 주차 시 각 동 출입구 이용. 지하1층 주차 시 102동. 104동 외부 계단실 이용하여 해당 동으로 이동 또는 101동. 104동 보행통로를 통해 데크층(외부) 으로 이동
- 단지 내 레벨차에 따라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진출입은 지하2층이며, 천장고는 지하 2층 차로 부분이 2.7m, 지하1층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은 배치계획,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실외기실 창호는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 및 간접등 박스의 깊이, 크기 및 위치는 본 시공 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 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동식 소화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음식물처리기 옵션 선택 시 주방싱크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가스보일러, 가스계량기와 메인 주방에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는 도시가스 공급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의 급·배기는 세대별 외부와 직접 급·배기 방식이며 급·배기를 위하여 세대 루버에 별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고, 세대 내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조명기구/배선기구/스마트스위치/세대 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침실1(안방) 및 침실2, 침실3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 련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견본 주택에서 확인)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통신단자함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식탁용 매입 또는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층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월패드 전화수신 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합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3KW 이상의 제품을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입면 장식물로 인해 실외기실 환기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난방배관의 환수측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장비에는 청정환기유니트 옵션 미선택 시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이 설치된 세대는 가스연결을 위한 연결구가 타공되지 않습니다.
- 전열교환기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본공사 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 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현관창고 도어는 바깥 여닫이 형태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내부 공간 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비내력 벽체는 석고보드 건식벽체 및 ALC블럭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이를 위한 설계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는 배수 배관을 위한 선홈통이 노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동선 및 사용 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 침실1(안방) 전면 발코니는 날개벽이 설치되지 않아 입상관 및 수전이 분합문에 노출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동선 및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환기장치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마감 레벨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소방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피난에 간섭되는 물건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상부에는 천장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스배관 및 보일러 연도가 노출 시공됩니다.
- 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비확장 시 환기장치 및 각종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발코니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크기, 개폐 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기준 2.3m이며,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시 위치 및 형태, 색상,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75㎡A타입은, 건립세대인 75㎡B타입과 세대 마감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가구의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와 도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확장세대는 유·무상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된 엔지니어드스톤, 마감판넬 등은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패턴, 색상,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75㎡A, 75㎡B, 84㎡의 경우, 전기오븐은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유상옵션 선택한 세대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 59㎡의 경우, 본주방 내에 별도의 전기오븐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59㎡의 경우, 다용도실에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을 제공하며, 가전 용량 및 사이즈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59㎡의 경우, 다용도실에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조명기구/배선기구/스마트스위치/세대 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유상옵션 붙박이장의 마감재는 세대 내 전시된 샘플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내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가구 상부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물탈수기(음식물 처리기 옵션 미선택시)가 설치되며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처리기 유상옵션 선택 시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며 음식물 처리기 설치로 인해 하부장의 구성 및 내부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수납 선반의 경우, 사용 패턴 및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품질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손잡이 등 가구의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의 위치,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손잡이, 철물 등의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천장몰딩,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판넬류 등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욕실 출입문 및 다용도실 문은 PVC 계통(ABS 재질) 도어로 시공됩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및 현관창고에 설치되는 판넬 등은 주택형별 및 홈스타일초이스의 선택에 따라 사이즈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선택형(올인원 드레스룸)에 따라 파우더 설치 유무, 부부욕실 진입 동선 및 욕실도어 크기(일부 타입), 드레스룸 도어 마감 등이 변경됩니다.

# ■ 스마트 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 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 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주차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단일 인식 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음성인식 AI 스피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kakao i 연동 세대별 loT 제어 서비스(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 연 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 범위, 적용 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홈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에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제품의 종류(9종 :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환 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 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 시 홈 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더삽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中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 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 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 :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 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59㎡, 75㎡B, 84㎡)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75㎡A)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증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더샵 지키미 시스템 및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월패드,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야간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모형은 형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더샵오산엘리포레.com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번지(1600-544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